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보도	2019.4.30.(화) 조간	배포	2019.4.29.(월)

책 임 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 김진홍 (02-2100-2601)	담 당 자	김준 사무관 (02-2100-2516) 정훈 사무관 (02-2100-2517)
	금감원 조사기획국장 김충우(02-3145-5550)		이승우 팀장 (02-3145-5663)
	금감원 특별조사국장 윤동인(02-3145-5100)		배중기 팀장 (02-3145-5106)
	한국거래소 심리부장 김경학(02-3774-9140)		이국철 팀장 (02-3774-9141)

제 목 : 2019년 1/4분기중 주식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1.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년 1/4분기중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하였음

2. 주요 제재 사례

- ① 상장사 인수계약 체결자가 인수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보물선 인양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급등시키는 한편, 인수계약 관련자 등이 동사 주식의 '대량 취득·처분 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에 주식을 매수(수사기관 고발 등, '19.1월 의결)
- ② 상장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유상증자 공시 前 동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회사 자금으로 동사 주식을 매수, 부당이득을 실현(수사기관 고발, '19.2월 의결)

- ③ 내부자가 전환사채의 발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전환사채의 매수를 유도하는 한편,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既 보유중인 주식을 고가에 매도(긴급조치, '19.1월 증선위 사후보고)

(붙임) ‘불공정 거래자에 대한 조치사례 세부내용’ 참조

3. 향후 계획

-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건 요지를 주기적으로 대외공개
 - * 18년 하반기 이후 보도자료 3회 既 배포, 매년 1, 4, 7, 10월 예정
-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지속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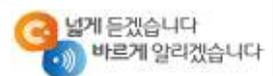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73, 5582, 5549, 5556
 - 팩스 : 02-3145-5580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1. 허위의 '보물선 인양사업'을 이용하여 부정거래를 한 사건

□ A○○, B○○, C○○, D○○, E○○ 5인은 상장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보물선 인양사업'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 애초부터 선채인양이 불가능함에도 (주)▲▲▲▲이 150조원 상당의 보물선인 돈스코이호 인양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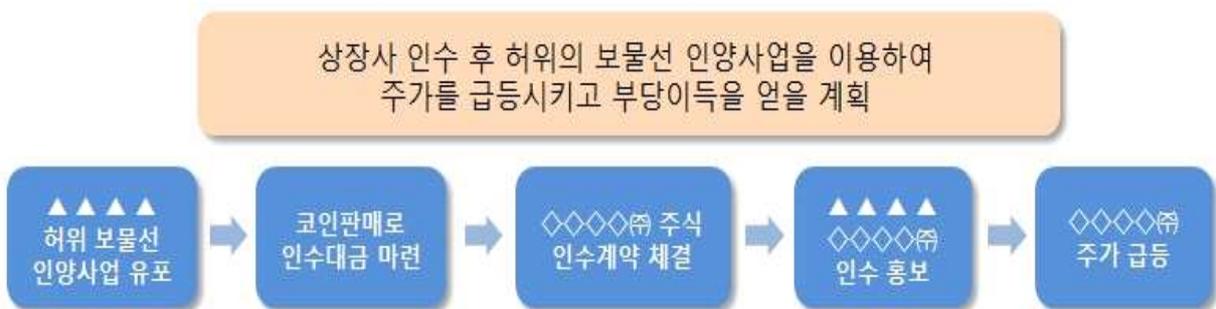
* 동시에 가상통화(△△△△△△)를 판매하여 상장사 인수대금을 마련

○ (주)▲▲▲▲이 ◇◇◇◇(주)를 인수한다고 홍보하여 ◇◇◇◇(주)를 보물선 관련주로 부각시킴으로써 동사 주가를 급등하게 하여 인수대상 주식 가치를 상승시킴(평가차익 58.6억원)

※ 탐사 등을 담당한 조력자 3인(F○○, G○○, H○○)에 대해서도 조치

□ 한편, 인수계약 관련자 등 8명은 '동사 주식의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에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이득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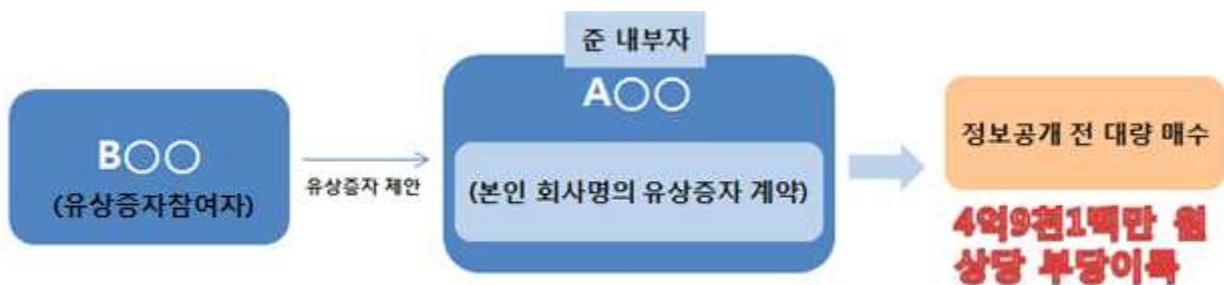
< 사건 개요 >



2.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수 사건

- (주)▲▲▲▲▲▲▲가 신사업투자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 (주)◇◇◇◇◇◇◇ 대표 A○○은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주)△△△ 대표 B○○의 권유를 받아 (주)▲▲▲▲▲▲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한 준내부자로,
- 동 정보가 공개되면 동사 주가가 신사업 진출 및 회사 재무구조 개선 기대로 큰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 동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前 시세차익을 노리고 본인 회사 자금을 유용, 동사 주식 5만 9천주를 매수하여 4억 9,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

< 사건 개요 >



3. 해외 수출계약 체결 등 허위사실 유포를 사용한 전환사채 발행 및 전환주식 고가매도 사건

- (주)甲회사 前 대표이사 A○○와 재무담당 이사 B○○는 공시 의무가 없어 회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장외거래 비상장 주식의 특성을 악용하여,
 - (주)甲회사가 발행하는 주주배정 전환사채의 청약실적이 매우 저조하자 전환사채 발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해외투자 유치계약 및 해외 수출계약 등 허위사실을 동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 동 계약이 허위임을 모르는 주주들로 하여금 전환사채를 매수토록 하여 2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으며
- 또한 (주)甲회사 前 대표이사 A○○는 동 전환사채 취득 후, 전환권을 행사하여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 (주)甲회사 재무담당 이사 B○○와 공모하여 동사 홈페이지에 허위 국내 매출계약을 게시하고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급등시킨 후,
 - 장외주식 거래업자 등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여 26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음

< 사건 개요 >

